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소병훈·김수흥・박완주

권인숙 • 인재근 • 용혜인

강득구・남인순・박상혁

어기구 • 박영순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계약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,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오고 있음.

그러나, 임대차 3법의 전면 도입으로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가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보완대책('20. 7. 10.)을 통해 임대차 3법과 정책효과가 비슷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을 발표한 바 있음.

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·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).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"를 "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 적물[2020년 7월 11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 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한다)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이라 한다)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 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단 기민간임대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.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를 말한다"로 하고.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임대용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"을 "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[2020년 7월 1 1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 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장기일 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 간임대주택인 경우,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 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"로 한다.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을 "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[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단기민간임대주택"이라 한다) 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"으로.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" 을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[2020년 7월 11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(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 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 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.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 택은 제외한다]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「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(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 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임대사업 자"라 한다)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(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 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건축하는 경 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. 다만,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아

정

개

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[2020년 7월 11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)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 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 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"이라 다)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(이하 이 조에서 "단기민간임대 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,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 1. • 2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 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 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 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세 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・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(「수도권정비계 획법 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은 6억원으로 한다)을 초과하 는 공동주택과 「지방세법」제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**4** -----

지 등 주택 또는 오피스텔[2020년 7월 11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,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

억원으로 한다)을 초과하는 오 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다.

1. ~ 3. (생 략)

⑤ • ⑥ (생 략)

제31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| 제31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\_ 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 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 택(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 며, 이하 이 조에서 "다가구주택 "이라 한다)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 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(이하 이 조에서 "오피스텔"이라 한 다)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

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]---. -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등에 대한 감면) ① -----

-----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[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」(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(이 하 이 조에서 "단기민간임대주 택"이라 한다)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] ---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[2020년 7월 11일 이후 「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| (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) 제5조에 따른 임대

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 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. 다 만,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・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 로 한다)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과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(「수 도권정비계획법 .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 다)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 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 략)

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
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
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
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
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
주택이거나, 단기민간임대주택
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
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
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
<u> </u>
은 제외한다]
은 제외한다]
<u>은 제외한다]</u>